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3. 2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3.20. 신 종 갑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15.3.20.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3.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 종 갑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2)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 3)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4)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을 포함함(안 제6조)
- 5)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6)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사업,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7)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구청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마포구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